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구미시 포상조례의 표창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표창장 수여 대상 중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는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3호)
-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을 상장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수부서 사기진작 및 시상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4호)

4. 참고사항

- 도 기획관실-2040('06.4.3)호의 「200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포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 중 용어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 및 보완하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코자함.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표창장」 수여 대상자 조항 중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는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

- 서, 팀」에 대한 포상은 「상장」수여 대상자로 추가하는 개정안임.
- 개정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 안 제5조의 불명확한 조항의 삭제는 바람직하나
 - 추가 신설하는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에 대한 시상 방법을 안 제5조의 삭제된 「표창장」수여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고, 안 제7조의 「상장」수여 대상 조항에 변경시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망됨
 - 그 이유는 조례 제4조의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조례 제12조의 포상절차는 「표창장」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토록 되어있으나 「상장」의 경우는 심의 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음
 - 금회 추가되는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경우, 포상의 필요성, 평가항목 구성의 적정성 여부 및 표창의 남발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